

ISA-1000

이 사 회 규 정



제·개·폐	일 자	시 행 일	승인권자	비 고
제정	1987.01.01	1987.01.01		
1차 개정	2003.04.15	2003.04.15		
2차 개정	2022.12.13	2022.12.13		
3차 개정	2025.08.12	2025.08.12		제 6조 추가
관 련 사 규	ISA1001.경영위원회지침 ISA1002.ESG위원회 운영규정			

ISA-1000-1/8	이 사 회 규 정	
제정: 1987.01.01		
개정: 2025.08.12		

제 1 조 (목 적)
이 규정은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구 성)
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며,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이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 중 1인의 간사를 둔다.
④ 간사는 이사회 담당부서 및 서기를 두어 회의준비, 회의관계서류 및 일지 등을 기록 보존하게 한다.
⑤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경영위원회를 두며, 경영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.

제 3 조 (감사 및 관계자 출석)
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관계자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4 조 (회의 구분 및 소집)
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.
②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각 인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③ 이사회 소집은 회의일 1일 이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여야 한다. 단, 이사 전원 및 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5 조 (회의 성립 및 결의)
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에 의하여 성립된다.
② 이사회 결의는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.
③ 당해 안전에 대한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동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④ 전③항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사는 이사 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ISA-1000-2/8	이 사 회 규 정	
제정: 1987.01.01		
개정: 2025.08.12		

제 6 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①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로써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감사위원회
2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3. ESG위원회
4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
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③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제 7 조 (상정안의 제출)

간사는 접수된 상정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상정안 제출 이사에게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①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이사는 별지 1호의 이사회 상정안을 이사회일 3일전 까지 간사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접수된 상정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상정안 제출 이사에게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간사는 상정일자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제출 이사와 협의, 의장에게 품의하여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.

제 8 조 (이사회장소)

이사회 개최장소는 본사를 원칙으로 하되,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.

제 9 조 (의사록)

① 이사회에 있어서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별지 2호의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하고, 출석이사 전원 및 감사가 기명 날인한다.

②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제기한 자는 그 뜻을 의사록에 기재할 수 있다.

③ 의안 중 보안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의사록 작성을 아니하게 할 수 있다.

ISA-1000-3/8	이 사 회 규 정	
제정: 1987.01.01		
개정: 2025.08.12		

제 10 조 (결의사항)
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1. 법령, 정관 및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
2.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사항
3. 이사회 자체에 관한 사항
4. 경영의 기본 방침 결정 및 변경 사항
5. 사업계획 및 중장기계획 설정
6. 사업장 신설 및 기존사업 중단, 철수
7. 자본금의 20/100이상 신규시설 증설, 별도공장 신설
8. 자본금의 10/100이상 해외투자, 해외지급보증
9. 인수, 합병, 분할
- 10.자원개발 투자결정
- 11.자본금의 10/100이상 광고계획 수립 및 집행
- 12.경영합리화
- 13.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
- 14.영업의 양수도 및 임대
- 15.매출액의 10%이상 단일 판매계약, 공급계약 및 계약해지
- 16.특별상여금 결정
- 17.인사고과제도 변경
- 18.급여체계 변경 및 조정
- 19.복리후생 방침
- 20.부동산 취득 및 처분
- 21.자산재평가 실시
- 22.증자 및 감자에 관한 결정
- 23.사채발행
- 24.자본금의 10/100이상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
- 25.자본금의 10/100이상 타법인 출자 및 처분
- 26.주식 액면분할 및 병합
- 27.자본금의 10/100이상 채무면제 및 채무인수
- 28.자기자본의 50%이상 신규 차입 결정
- 29.자본금의 10%이상 타인에 금전 가지급, 금전 및 유가증권 대여
- 30.자본금의 10%이상 증여
- 31.사외이사 선임 및 해임
- 32.공개매수 결정 및 실권주 처리결정
- 33.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부여취소

ISA-1000-4/8	이 사 회 규 정	
제정: 1987.01.01		
개정: 2022.12.13		

34. 회사와 최대주주 또는 이사와의 제반 거래

35. 기술도입, 기술이전, 기술제휴계획

36. 신물질 및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 취득, 양도 및 양수

37. 자산총액 10%이상 고정자산 취득 및 처분

38.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

39. 소송가액이 자본금의 10/100이상인 소송

40. 기타 법률, 정관 등에서 규정한 사항

41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11 조 (이사회 보고사항)

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전에 매월 서면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자본금의 3/100이상 20/100미만의 신규사업, 중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

2. 자본금의 10%미만 해외투자

3. 자본금의 3%이상 10%미만의 광고계획 수립 및 집행

4. 매출액의 5%이상 10%미만의 단일판매계약, 공급계약 및 계약해지

5. 한도 외 회사 또는 사업(본)부 운영경비 집행

6. 전결한도 변경

7. 분기별 경영실적 심사분석

8. 업적평가

9. 회사의 전산화 추진 및 장비 도입

10. 상벌에 관한 사항

11. 인력 T/O책정

12. 4급이상 사원의 채용 계획

13. 승진

14. 2급이상의 인사이동

15. 기구조직 개편

16. 임원평가

17. 계획 수립 및 집행

18. 회사의 인원변동 현황

19. 대표이사 업무인계인수 결과

20. 임원의 차량구입 및 처분

21. 임원의 해외출장

22. 노사협상(단체협약, 임금협약) 진행사항 및 결과

23. 자본금의 5%이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및 해지

24. 자본금의 10/100미만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

ISA-1000-5/8	이 사 회 규 정	
제정: 1987.01.01		
개정: 2022.12.13		
25. 자본금의 10/100미만 타법인 출자 및 처분 26. 자본금의 10/100미만 채무면제 및 채무인수 27. 자기자본의 10/100이상 50/100미만 신규 차입 결정 28. 자본금의 10%미만 타인에 대한 금전 가지급, 금전 및 유가증권 대여 29. 자본금의 10%미만 증여 30.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 변경 31. 결산서 및 법인세 신고 32. 분기 및 연간 자금계획 수립 33. 인당 일천만원 이상 임직원 일시 대여 34. 분기별 자금운용 변동 상황 35. R&D투자 및 신기술 개발계획 36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37. 소송가액이 자본금의 10/100미만인 소송 38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		

ISA-1000-6/8	이 사 회 규 정	
제정: 1987.01.01		
개정: 2022.12.13		
부 칙		
제 1 조 (시행일)		
1. 이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개정·시행한다.		
2. 이 규정은 2003년 4월 15일부터 개정·시행한다.		
3.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개정·시행한다.		
4. 이 규정은 2025년 8월 12일부터 개정·시행한다		
제 2 조 (경과조치)		
1. 이 규정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		

ISA-1000-7/8	이 사 회 규 정	
제정: 1987.01.01		
개정: 2022.12.13		

(별지 1호) 이사회 상정안

이 사 회 상 정 안

* 제안번호, 상정 년 월 일 및 차수는 이사회 주관부서에 기재.

제안	제 호 : 상정일자: 년 월 일 (제 차)			
제안명				
제안내용				
제안이유				
첨부서류	1.		4.	
	2.		5.	
	3.		6.	
제안부서			이 사 : 인	
제안 년 월 일	년 월 일			

